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50
----------	------

2017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이성희 의원 외 찬성의원 9명
- 나. 발의일자 : 2017년 2월 14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2월 15일
- 라. 상정결과 : 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2월 2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 등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무분별하게 외래어와 비속어가 남용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줄이고자 함.  
또한 시장이 각 자치구에서 한글표기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함 (안 제16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시장이 권고할 수 있게함 (안 제23조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첨부)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현재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무분별하게 외래어와 비속어가 남용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줄이고 시장이 각 자치구에서 한글표기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세부사항

- 서울시는 현재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의 국어·한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동 조례안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2014년 7월 조례 제정이후 약 2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행되고 있지 않아 외래어와 비속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울시의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5년→2년)를 줄여한글 표기가 올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 <실태 조사 및 평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생략) ②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u>5년마다</u> 실시한다.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u>2년마다</u> 실시한다.

- 한편 동 조례안 제23조(과태료)를 신설하여

각 자치구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에 실효성을 강화하여 업체의 자정작용 및 자치구에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장이 이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동 조례안 제15조제1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1)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한글로 표기되지 않은 간판은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없으며 불법 간판을 게시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관할 구청

1)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의 의지 부족으로 현재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방법에 있어 한글로만 적거나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해야 하나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외국어 간판은 “상표법 상 등록된 간판”으로 단속에서 면제되고 있어 실제로 단속대상의 범위가 넓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옥외광고물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단속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합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과태료>**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과태료)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동 조례안 제23조(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제23조(규칙)를 제24조(규칙)로 이동함.

**<규칙>**

현행	개정안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종합 의견**

○ 현재 서울시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외래어와 비속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5년→2년)를 줄여 한글 표기가 올바르게 되도록 하며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에 대해 관할 구청의 의지 부족으로 현재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단속강화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조례안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50
----------	------

발의연월일 : 2017년 2월 14일

발 의 자 : 이성희 의원(1명)

찬 성 자 : 박성숙, 문상모, 김기만,  
김구현, 김미경, 이혜경,  
이상목, 남재경, 김정자(강서)  
의원(9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에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 등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무분별하게 외래어와 비속어가 남용되고 있어 이에 관련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줄이고자 함.  
또한 시장이 각 자치구에서 한글표기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해마다 실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함 (안 제16조)
-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함. (안 제23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5년마다”를 “2년마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생략) ②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u>5년마다</u> 실시한다.	제16조(실태 조사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실태 조사를 <u>2년마다</u> 실시한다.
<u>&lt;신 설&gt;</u>	<u>제23조(과태료)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u>제23조(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24조(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실태조사 및 평가)제2항 일부 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23조(과태료)가 신설되어 비용(세입) 발생
  - 단,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고, 또한수입의 증가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나. 추계결과 ≍ 150,000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50,000천원으로 연평균 30,000천원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8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8)	2차년도 (2019)	3차년도 (2020)	4차년도 (2021)	5차년도 (2022)	합계
세입	-	-	-	-	-	-	-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및 평가 (제16조)	50,000		50,000		50,000	150,000
	소계(b)	50,000		50,000		50,000	150,000
□ 총 비용(b-a)		50,000		50,000		50,000	150,000

- 실태조사 및 평가 비용은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사용)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사업의 2017년도 편성 예산을 적용

사업명	과목명	사업명	예산액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제공	사무관리비	○ 한글사용 실태조사 및 국어사용 매뉴얼 작성 등	50,000천원

자료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담당관 예산분석팀장 주무관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이은영 강평선 ☎ 02-3705-1279 / e-mail : kangdan@seoul.go.kr
--------------------------------	----------------------------------------------------------------------------